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정 2012. 2. 1. 문화재청 예규 제107호
일부개정 2014. 7. 11. 문화재청 예규 제14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국내외문화재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국내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중요 문화재(이하 "긴급매입 문화재"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 가. 국내에서 경매되는 문화재로 매입하지 않을 경우 국외로 유출·반출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
- 나. 개인·법인 등 소유자가 국가에 매입을 청구한 것으로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유실·분실·훼손·철거 위험에 있는 문화재
- 다. 국가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언론보도 등 사회여론이 형성된 문화재라. 철거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는 특수상황 문화재
- 마. 지방자치단체,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문화재청에 매입을 건의한 문화재
- 바.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을 결정한 문화재

2.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향후 문화재로 보호될 가치가 높은 동산 또는 부동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

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지역이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이다.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제1항 제1호 라목의 "특수상황 문화재"라 함은 국외에 반출되거나 국외에 소재한 것으로 선조들이 제작, 설립, 매입·사용하는 등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갖는 문화재를 말한다.

③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비"(이하 "문화재 긴급매입비"라 한다.)라 함은 『문화재보호기금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 용도로 편성된 "문화재 긴급매입비"를 말한다.

④ "민간대행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기금운용계획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문화재청이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를 말한다.

⑤ "민간대행사업자"라 함은 문화재청의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사업을 문화재청을 대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원칙) 문화재청장은 긴급매입 중요 문화재를 매입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

제4조(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국내외 공개 경매 문화재 매입여부
2. 개인, 법인 등 문화재 소유자가 매입을 요구한 문화재 매입여부
3. 매입 필요성에 대한 언론보도 등 사회여론이 형성된 문화재 매입여부
4. 매입 필요성이 제기 된 특수상황의 문화재 매입여부
5. 지방자치단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매입을 건의한 문화재 매입여부
6. 제10조에서 규정한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제한 여부
7. 경매 상한 입찰가격
8. 긴급매입사무 민간대행자 선정
9.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매입 문화재 관련 외부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수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단, 외부 전문가는 구성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관광·법률·종교·언론·부동산·경매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외문화재 긴급매입 관련 유관기관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의결) ① 긴급매입 문화재 가치여부를 "상"·"중"·"하"로 표시하며 매입 가치에 대하여 출석 위원 중 1명이라도 "하"가 있으면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각 위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매입심의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매입 제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긴급매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2. 도난·도굴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대상문화재의 소장자가 도굴 혹은 절도 등 전과사실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4. 문화재청에서 필요하지 않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특수상황의 문화재로서 해당국이 역사적 문화재로 평가해 문화재로 지정하여 철거나 훼손의 위험성이 적은 문화재
6. 매입 이후 문화재청(문화재청이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도 포함)이 직접 운영할 실익이 없거나 운영비 등이 과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문화재 매입 소관부서장이 담당하고, 서기는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담당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서기는 사무를 정리하고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① 문화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문화재에 대한 가치 조사 등을 위하여 선정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지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3조(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절차) ①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비를 활용하여 문화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관(‘과’단위를 포함한다)은 정책총괄과 사전협의 후 긴급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비는 대행 사업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③ 긴급매입과 관련하여 대행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통하여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계약서에 따른다.

제14조(긴급매입사무 민간대행) ①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
2.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4. 그 밖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 분야에서 5년이상 활동한 단체

제15조(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재산소유권 등) ①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비로 매입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로 관리한다.

② 긴급매입 문화재를 취득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4조(등기·등록)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대상선정 심의 등 예외) ① 문화재 구입에 관한 별도의 규정(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 규정 등)이나 지침에 따라, 긴급매입비를 활용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과" 단위를 포함한다), 문화재청장의 결재를 받아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예규 제107호, 2012. 2.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140호, 2014. 7.1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대상 선정 심의결과¹⁾

(심의 제 - 호)

1. 문화재 개요	
2. 제안사항	
3. 제안사유	
4. 주요골자	
5. 현지조사 의견	
6. 참고사항	
7. 검토의견	

아래와 같이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대상 선정을 심의함

년 월 일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

구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매입가치			평가결과 종합
			상	중	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1) 항목은 별지로 작성 가능하며, 도면 등 필요사항을 추가 할 수 있음